

의 안 번 호	제 138 호
의 결 년 월 일	1997. 1 . 29.
의 결 사 항	원안가결

발 의 자	박병수 의원외 3인
제출년월일	1997. 1 . .

제60회 보은군의회(임시회)회기결정의건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제6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
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
규정에 의하여 제6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지방자치법
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: 안건 1부. 끝.

발 의 자 : 박 병 구 (원)
(찬 성 의 원 서 명 : 붙 임 참 조)

■ 제 안 설 명

제60회 임시회에서는 제2대 개원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고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의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“제2대 전반기 의정보고회 개최계획의 건”을 의결하고자 96년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2일간 실시할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 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.

기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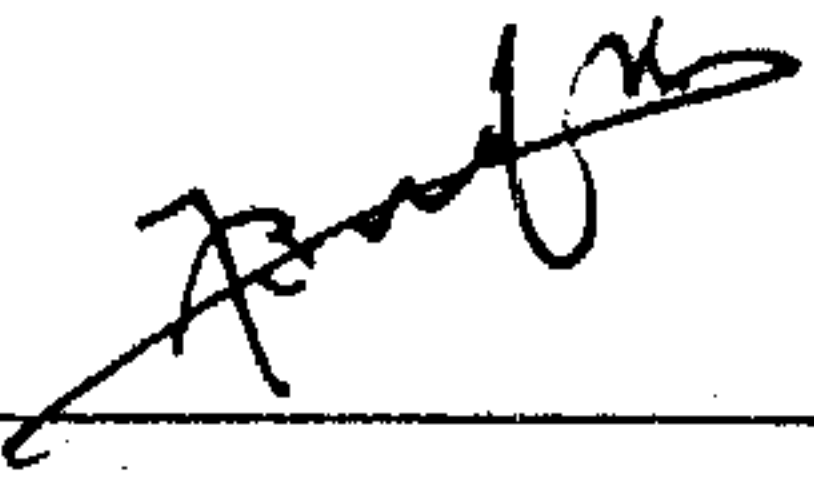
의 사 일 정

제60회 보은군의회 (임시회)

'97. 1. 28 ~ 1. 29 (2일간)

일 시	부 의 안 건	비 고
97. 1. 28(화) 14 : 00	○ 개 회 식	
97. 1. 28(화) 14 : 15 (제1차본회의)	1. 개 의	
97. 1. 29(수) 14 : 00 (제2차본회의)	1. 제60회보은군의회회기결정의건 2. 2대전반기의정보고회개최계획의건	

의안찬성의원서명

성명	서명	(인)
김인수		
유성재		
이종수		